



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

| 구분 | 서류 유형 | | 해당 서류 | 발급기준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구비 서류 | ○ |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서약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당첨자 협약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| 본인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|
| | ○ | | 신분증 사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|
| 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• 주민등록표 등분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 |
|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| ○ | | 위임장 | 본인 |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 및 도장 | 본인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|
| | ○ | | 대리인 신분증, 인장 | 대리인 | •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|

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

| 구분 | 서류 유형 | | 해당 서류 | 발급기준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구비 서류 | ○ | |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• 인터넷청약[청약Home(www.applyhome.co.kr)]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|
| | ○ |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서약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당첨자 협약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| 본인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|
| | ○ | | 신분증 사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 |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|
| | | ○ | 단신부임 입증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) | 본인 |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·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|
| 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세대원 | •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)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•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| 직계존속 | 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경 산정 시,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확인 위한 필수제출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 |
| 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및 해당 시·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|
| 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자녀 | 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배우자 | •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함) |
| | | ○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본인 |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|
| | | ○ |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(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 진단서만 인정)제출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이 가능해야 함 |
| | | ○ | 출산이행각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[주택전시관의 비치] 임신의 경우 |
| | ○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입양의 경우 | |
| | ○ | 장기복무군인 확인서류 | 본인 | 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 복무 기간을 명시 | |
|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| ○ | | 위임장 | 본인 |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 및 도장 | 본인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|
| | ○ | | 대리인 신분증, 인장 | 대리인 | •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|

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구비서류 | ○ |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서약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당첨자 협약서 | 본인 | • [주택전시관 비치] |
| | ○ | |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| 본인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|
| | ○ | | 신분증 사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 |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|
| | | ○ | 단신부임 입증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) | 본인 |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|
| |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| •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-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* 해외에 체류 중(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*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*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일반(기관추천)특별공급 제외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 | 배우자 | •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름)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| 직계존속 | • 청약신청자(세대주)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| 직계비속 | 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※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으로 발급 |
| 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|
| 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직계비속 | 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 |
| 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직계존속 | 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|
| 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배우자 | •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| ○ | 장기복무군인 확인서류 | 본인 | 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 복무 기간을 명시 |
| |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| ○ | | 위임장 | 본인 |
| ○ | | | 인감증명서 및 도장 | 본인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|
| ○ | | | 대리인 신분증, 인장 | 대리인 | •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|

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보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기재요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